

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

(사전조사·감사기간: 2021.2.1.~2.18)

일련 번호	제 목	처분요구 내용	조치결과	비고
1	외부강의 신고 점검 미이행 등 운영 소홀	외부강의 등 특별승인을 위한 내부 서식 및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강의 등의 점 검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외활동 운영관련 제도개선 계획 마련(2021.06.04.) - 근무시간 중 대외활동의 경우 출장연차휴가 등 복무규정 준수 - 외부강의 등 활동의 경우 월 3회 6시간 제한 준수 및 이를 초과 할 경우 대표이사 특별승인 	
2	‘경기도 라떼파파’ 성평등 캠페인 사업 집행 소홀	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재무회계규정 등에 따라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업무 담당자 및 직원 대상으로 계약관련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계법령과 재단 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 철저히 관리 - 신규직원 교육 시 계약관련 교육내용 포함 	
3	경기도 아동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	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보험료 총 4,257천원에 대하여 업체 로부터 “환수(시정)”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내용을 업체에 안내하고 환수 조치 완료(총 4,256,900원) 	
4	업무용 공용차량 임차 관련 기초(추정) 가격 산정 부적정	앞으로 기초금액 산정시 관련 법령들 을 준수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기초금액 산정 관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	
5	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	관련 규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맞도록 평정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 획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도록 “주의” 조치 및 평정지표 개선 등 각 직무 및 재단의 특성에 맞게 근무성적을 평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“통 보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년부터는 근무성적평정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행정 절차에 맞도록 평정계획 수립 및 실시 • 2021년 근무성적평정규칙 개정안 을 마련하여 직원 동의절차 추진 하였으나, 과반수 미만 투표로 규칙 개정 부결되어 현행 규칙에 따라 평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 직원에게 직군별 평가 방법 및 평가등급 5단계 강제배분 등 규칙상 기준에 대해 안내 	

일련 번호	제 목	처분요구 내용	조치결과	비고
6	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른 복무관리 소홀	「탄력근무제 운영지침」에 따라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는 자의 복무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년 분기별 복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, 1분기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탄력근무제 운영 지침에 따라 월 4회 미준수자에 대해 ‘주의’처분 등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완료 	
7	행사·홍보비 예산집행 및 급식비 신용카드 결제 부적정	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년 예산 편성 시에는 행사·홍보비 명목에 직원 워크숍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며, 하반기부터는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영수증 카드로 처리 	
8	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처리 소홀	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복무관리 업무 소관부서(기획조정실)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도록 공무국외여행 절차 개선안 마련 및 시행 	
9	계약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	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이행보증 업무를 처리하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계약법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주의 	
10	회계시스템 운영개선 소홀	회계시스템에서 지출결의와 지정금고 이체가 연동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실무절차 “개선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계시스템에서 지출결의로의 연동서비스 지원이 어려웠던 하나은행의 금고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 중에는 ERP시스템에서 지출결의와 지정금고 이체가 연동되는 ‘농협’으로 연계 추진 현재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지출결의 내역은 확인이 가능하며, 7-8월 중 사업부서 내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일상경비 지출결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추진 중 	
11	세입세출외현금 업무처리 부적정	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출원과 현금출납 직무를 분리하여 회계부정을 방지하도록 “주의”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출원을 경영기획팀장으로, 현금출납 직무담당자를 회계담당 선임직원으로 분리지정하였으며, 관련 법령에 의한 회계장부를 비치 	